

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

(앞쪽)

요청인 인적 사항	성명	생년월일		
	소속	연락처	자택	
	직위		휴대전화	
	직급 등		전자우편주소	
	퇴직일자	주소		

취업예정사실	취업예정기관 명칭		취업예정일
	기관의 규모 (억원)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	연간 외형거래액

취업경위	취업예정직위
	취업 후 담당업무
	취업 후 활동계획 * 본인의 특정한 업무경력과 취업예정업체의 담당 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으로 작성
	취업동기 및 경로 * 공모나 추천 등 구체적 경로를 자세히 작성
	취업예정기관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이유

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별지 제19호서식(취업 예정 확인서) 2. 별지 제23호서식(업무취급 승인신청서)(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)
------	---

작성방법

- 소속·직위·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,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·직위·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-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
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1항제1호(영리사기업체)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(법무법인등, 회계법인, 세무법인,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, 합작법무법인)은 연간 외형거래액을, 제1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(사회복지법인 등)은 기본재산을 적으십시오.
-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
 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(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사감사, 조세부과, 계약, 감독, 사건수사 등)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(업무취급 승인신청서)을 작성하여 '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'와 함께 제출하십시오.

